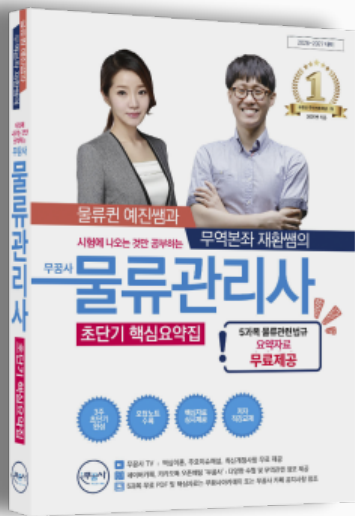


물류관리사 핵심요약집 개정사항 안내

(2026.05.11 개정판)



※ 표현 변경 ※

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	기존표현	개정표현
	기획재정부	재정경제부
	기획재정부장관	재정경제부장관
	산업통상자원부	산업통상부
	산업통상자원부장관	산업통상부장관
	통계청장	국가데이터처장

※ 제1장 물류정책기본법 ※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 295 (2) ② ⑦	<p>기획재정부, 교육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국가정보원</p>	<p><u>재정경제부</u>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<u>산업통상부</u>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<u>기획예산처</u>, 국가정보원</p>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 299 5.(1) ②	환경부장관	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 299 5.(1) ③	③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	③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

※ 제2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※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327 (3) ④	기획재정부장관	<u>재정경제부장관</u>
P.331 (7) ② ㉔ 신설	㉔ <u>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</u>	
P.331 (8)	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.	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<u>필요하면 스마트물류센터인증(이하 "본인증"이라 한다)</u> 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.
P.340 10. (1) ⑦ 신설	⑦ <u>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</u>	

※ 제3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※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 383 2. (1)	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, 증차 또는 대폐차(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)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.	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, 증차 또는 대폐차(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)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.

※ 제4장 항공운송사업법 ※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P. 391 1. (3)	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㉠ 정관 ㉡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(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) ②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: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	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: 정관 ②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: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

※ 제5장 유통산업발전법 ※

교재 페이지	기존사항	개정사항
<p>P. 409 2. (1) 허가 등의 의제</p>	<p>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·지정·등록 또는 허가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	<p>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·지정·등록 또는 허가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<u>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</u>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
<p>P. 410 2. (2) 서류제출 및 협의</p>	<p>①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①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(1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<u>삭제</u></p>